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779
------	------

2022. 2. 21.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10월 14일, 안광석 의원 외 12명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20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】

-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2.2.14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안광석 의원)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2019년 1월 투자·출연기관 간 상이한 임원 연임기간을 1년 단위로 통일하여 탄력적으로 인사운영을 하고자 ‘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’을 시장방침으로 세웠고,

개정 후 계획에 따라 실행할 예정이었음.

나. 약 3년이 지난 2021년 10월 현재 세종문화회관의 연임 관련 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조례 및 정관에 따라 임원이 연임할 경우 3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음.

다. 따라서 공기업담당관이 세운 방침의 목적에 맞게 세종문화회관의 연임 규정을 1년 단위로 개정하고 1회로 제한된 규정은 삭제하여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케 하고, 이를 통해 우수인재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임원의 연임 기간을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함(안 제8조제1항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의 「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」(2019.1.)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임원의 연임기간을 1년으로 개정하기 위한 사항임.
- 서울시는 출자·출연기관마다 각각 다른 임원의 연임규정을 ‘1년

단위'로 통일하여 임원의 인사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방침을 세우고, 출연기관 표준정관 개정안을 마련하였음.¹⁾

- 그러나 방침 작성 이후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조례 및 정관은 임원의 연임을 3년 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 안광석 의원(강북4, 더불어민주당)이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임.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9조 (임원의 임면 등)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,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정관

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고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노동이사는 임기 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법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.

나. 상위 법령 및 제규정 준수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지방출자출연법」)은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

1) 「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」(서울시 공기업담당관, '19.1.)

〈출연기관 표준정관 개정(안)〉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하며, 0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(후략)	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(후략)

있으며, 행안부가 작성한 「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지침」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별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.²⁾

- 한편 「지방공기업법」은 임원의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, 「서울시 투자기관 및 출자·출연기관의 인사·조직 지침」을 총괄하는 공기업담당관은 탄력적인 인사운영과 더불어 우수인재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를 통일하는 방침을 세웠음.

지방공기업법

제59조(임기 및 직무) ① 공사의 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② 공사의 사장,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
③ 공사의 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.

-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「지방출자출연법」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및 출자·출연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, 이에 부합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은 임원의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음.
- 서울시 방침 역시 상위법의 목적에 따라 출연기관의 연임 기간을 ‘1년 단위’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임원의

2) 「지방 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지침」(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) p.8 <연임 및 해임>
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별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며, 임기 중이라도 해임이 가능함. 인사권자는 연임 또는 해임 여부를 결정할 때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기준을 반영토록 함.(이하 생략)

임기를 명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함.

다. 종합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의 「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」(2019.1.)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임원의 연임기간을 1년으로 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임.
- 상위법령의 제정 목적에 따라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11명 ,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안광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7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4일
발 의 자 : 안광석 의원(1명)
찬 성 자 : 경만선, 김소영, 김춘례,
김태호, 노승재, 신원철,
오한아, 유 용, 이광성,
이종환, 최영주, 황규복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2019년 1월 투자·출연기관 간 상이한 임원 연임기간을 1년 단위로 통일하여 탄력적으로 인사운영을 하고자 ‘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’을 시장방침으로 세웠고, 개정 후 계획에 따라 실행할 예정이었음.
- 약 3년이 지난 2021년 10월 현재 세종문화회관의 연임 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조례 및 정관에 따라 임원이 연임할 경우 3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음.
- 따라서 공기업담당관이 세운 방침의 목적에 맞게 세종문화회관의 연임 규정을 1년 단위로 개정하고 1회로 제한된 규정은 삭제하여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케 하고, 이를 통해 우수인재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임원의 연임 기간을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함(안 제8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 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될 수 있다.”를 “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법인의 이사장·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다만, 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임원의 임기 및 직무) ① 법인의 이사장·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될 수 있다. 다만, 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 - ④ (생략)</p>	<p>제8조(임원의 임기 및 직무) ① ----- -----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 ④ (현행과 같음)</p>